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6
----------	------

제출일자 : 2023. 3. 8.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영어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사업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실용영어 특성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수정

- (당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 (변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나. 지원 사업명 변경과 사업 확대(안 제2조, 제3조)

-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영어 체험학습으로 변경
- 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 추가(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5항)

다.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조문 정비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범위를 반영하여, 군민의 범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삭제(안 제2조)
- 수강생을 군민에서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직원으로 확대(안 제4조)

라. 위탁사무의 범위 조문 추가(안 제6조)

마. 영어 공교육 지원의 범위를 확대 및 근거 법령 정비(안 제8조)

바. 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사업 근거 조항 추가(안 제9조)

바. 준용 조례 명시(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평생교육법」 제5조, 제16조

(2)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3. 1. 30. ~ 2. 20.)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하는 영어교육 사업의 실시·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초·중·고교를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군민”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원어민 영어교실”이란 원어민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강좌를 말한다.
5. “영어 체험학습”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시설 내에서 영어권 문화 및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상 영어 학습”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영어학습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실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영어교육 지원사업
2. 원어민 영어교실 개설·운영사업(원어민 강사 파견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
3. 영어 체험학습 개설·운영사업(학습 일정 수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
4. 화상 영어 학습 개설·운영 사업(화상영어 학습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수강생 관리, 그 밖에 이에 부수된 사업)
5. 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수강생) 제3조 각 호에 따른 영어교육 사업의 수강생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어린이집 원아, 군민,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도 사업의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영어교실의 원어민 강사료, 보조 강사료
2. 영어 체험학습의 위탁교육비
3. 화상영어 학습의 수강료

② 군수는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영어 공교육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의 사업으로써 관내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그 밖에 그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
2. 원어민 영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한국인 보조교사 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9조(어린이집 영어교육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5호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그 밖에 그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영어교사 방문 교육 지원
2. 그 밖에 어린이집 영어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10조(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